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위한 영업신고증 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공된 정보는 최신 정보 및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농어촌민박업 체크리스트

항목	요건 내용	비고	법적 근거
신청서류	등록 신청 시 필수 서류 제출	(i) (신고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ii) (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iii)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지역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
호스트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으로,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해당 요건 충족하지 못해도 무방	농어촌정비법
주택 유형	단독·다가구주택일 것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용도제한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된 특정 요건 충족 주택)은 농어촌민박 신고 불가	농어촌정비법
실거주	신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농어촌정비법
소유권	(원칙) 신고자가 주택을 직접 소유할 것 (예외) (i)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이거나, (ii)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도 신고 가능		농어촌정비법
면적	연면적 230㎡ 미만일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위한 영업신고증 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공된 정보는 최신 정보 및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방안전	(i) 소화기, 피난구유도등 또는 피난유도표지,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 관리 (ii) 건전지를 주전원 감지기 등은 정상 작동 가능하도록 건전지를 교환 (iii)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피난시설	(1) 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 (2)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i)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 ·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ii)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iii) 화기취급처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iv)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 관리할 것	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조식 제공시설	(i) 냉장고 등의 시설 구비,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 · 냉장시설에 보관 (ii) 조리시 개인위생 유지, 주방도구는 사용 후 위생적으로 조리 · 세척하는 시설 구비하여 주방도구 사용 후 세척 · 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 · 관리 (iii)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불필요) (iv) 수도물이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v) 주방 청결 유지 · 관리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이 외에도 필요한 시설기준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조식제공 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 · 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식수구비	객실에 먹는물 구비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숙박위생	(i)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 (ii) 이불 · 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위한 영업신고증 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공된 정보는 최신 정보 및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iii)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		
법위반행위 금지	(i)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ii) 청소년 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 게시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교육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서비스 · 위생 · 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매년 3시간(소방 · 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 · 위생에 관한 교육 1시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사업 장 표시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있는 경우만 해당)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출입문에 표시할 경우 가로 20cm × 세로 20cm 이상, 민박주택의 주 출입문에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높이로 부착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할 경우 크기 제한은 없으나, 메인화면에 보이도록 표시 아랫부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음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사업장에 불법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됨	금지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